

Ⓢ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-08810호

시행일자 2021. 10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위해성 관리 계획(RMP) 대상 알림(식약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10320(2021.10.14.)

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(펜터민, 펜디메트라진, 디에틸프로피온, 마진돌 성분)를 위해성 관리 계획(RMP)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식약처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: 16개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각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 협의회장)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